의안번호	5127
의 결 연 월 일	2026. . . (제 회)

세종시민의 안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발 의 의 원	이순열 의원 외 9 명
발의연월일	2026년 09월 18일

세종시민의 안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이순열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5127

발 의 년 월 일 : 2026년 09월 18일
발 의 의 원 : 이순열, 강해정, 곽효정, 김창연, 김현미, 박병남, 손인수, 유인호, 윤성규, 정연희 의원(10명)

1. 주문

○ 인공지능 산업의 성장과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의 확대에 따라 대규모 전력·용수 사용, 냉각시설 운영, 교통량 증가 및 토지이용 변화 등 지역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은 일정 규모의 사업에 대해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대상에서 특별자치시가 제외되어 있어 세종시가 지역 여건에 맞는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에서도 시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 제1항 등에 ‘특별자치시’를 포함하도록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함.

2. 제안이유

○ 최근 인공지능 · 데이터산업의 성장으로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시설이 확대되면서 전력과 용수 사용, 냉각시설 운영, 교통량 증가 및 토지이용 변화 등 다양한 환경영향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특히 도시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연계되는 경우 사업 초기부터 입지 적정성과 주변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세종시에서도 데이터센터 건립을 둘러싸고 소음, 전력 수급, 안전성 및 주거환경 등에 대한 주민 우려와 반발이 제기되는 등 새로운 유형의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적 검토 필요성이 현실화되고 있음.

○ 그러나 현행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제1항은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시 · 광역시 · 도 · 특별자치도 등을 규정하면서 특별자치시를 포함하지 않고 있어, 세종특별자치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체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임.

○ 이에 특별자치시에서도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환경권을 보호하고 첨단산업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이송처

○ 대한민국 대통령(비서실장), 대한민국 국회의장, 국무총리(국무조정실장),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국민의힘 당대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기후환경에너지부, 세종특별자치시장

붙임 세종시민의 안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세종시민의 안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촉구 건의문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인공지능과 데이터산업의 성장으로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시설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시설은 미래 산업의 핵심 기반이지만, 대규모 전력·용수 사용, 냉각시설 운영, 교통량 증가 및 토지이용 변화 등 지역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데이터센터 등이 도시개발이나 산업단지 조성과 연계되어 추진되는 경우에는 사업이 본격화되기 전에 입지의 적정성과 주변 주거·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세종시에서도 최근 데이터센터 건립을 둘러싸고 소음, 전력 수급, 안전성 및 주거환경 등에 대한 주민 우려가 제기되는 등 첨단산업 시설의 입지와 환경영향을 둘러싼 갈등이 나타난 바 있다. 이는 첨단산업을 제한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업 초기부터 환경적 영향을 검토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산업 발전과 시민의 삶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은 일정한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42조제1항의 적용 대상에 특별자치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세종특별자치시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자체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조례로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

세종시는 앞으로 인공지능·데이터산업 등 새로운 첨단산업과 개발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시민의 안전과 환경권을 보호하면서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도 지역 특성을 고려한 조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제1항에 ‘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법률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법률 개정에 맞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특별자치시가 실효성 있는 조례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라!

2026. 10. 8.

세종특별자치시의회